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예금보험공사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6.20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윤 상 기(02-2100-2910)	담 당 자	윤 영 주 사무관 (02-2100-2903)
	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장 장 진 영 (02-758-1051)		원 선 희 팀 장 (02-758-1053)

제 목 :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입니다.
[머니투데이 6.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<보도 내용>

□ 머니투데이는 **「연5000억 예보료, 누가 내나요?」 제하**의 **기사**(6.20일)에서,

○ “은행이 대출 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**예보료 부담**을 **전가**하고 있다는 비판..“**예금자보호 비용**을 **대출자가 부담**하나라는 지적”

○ “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.” 등 내용을 보도

<설명 내용>

□ 예금보험료는 **예금자등을 보호**하고 **금융제도**의 **안정성**을 **유지**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, **“금융회사”**가 부담하는 **“금융회사의 비용”** 입니다.

○ 동 비용을 **금융회사**의 **수익**(대출이자 등)으로 **충당**할지, **다른 비용**(예금이자 등)을 **절감**하여 충당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**경영여건을 감안**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
□ 다만, 실제 금리 수준은 **경쟁시장**에서의 **수요·공급**에 따라 **결정**되게 되는 만큼

○ 금융회사의 **금리원가 보전**을 위한 **실무처리방식**의 **차이**가 **실제 금리수준**을 **결정**한다고 보기는 **어렵습니다.**

□ 아울러, 이러한 **금융회사 비용**이 **소비자**에게 **전가**되는지 여부는 **이론적 연구의 대상**으로서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,

○ **예금·대출시장**의 **경쟁적 특성**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**제한적**일 것으로 추정됩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